[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]

‣ 자격증 신청절차

‣ 자격증· 회원증 신청 접수처

전국 시· 도 지방협회에서 자격증 및 회원증 신청을 접수합니다. 구비서류, 발급신청 등의 정보는 "한국사회복지사협회 - 지방협회안내"를 통해 해당 지역 지방협회와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문의: 02-786-0845)

‣ 구비서류

공통	1.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(시도사회복지사협회 경유 원칙) 지방협회 보기 [http://lic.welfare.net/lic/ViewCertRequestStep.action] 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×4 센티미터) 사진 2매
별도 구비서류	[본교 졸업자] 1.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(2010학년도 실습생부터 적용) 2. 졸업증명서 / 성적증명서 각 1부 . 인터넷 발급 : 세계사이버대학 홈페이지 → 학생서비스 → 발급서비스 → [인터넷증명발급센터] 클릭 → 증명서발급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가능 . FAX 민원 신청 :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→ 팩스 민원 신청 ※ 단, 평생학습과정(학점은행제- 시간제 등록자)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'국가평생교육진흥원' 에 학점인정 신청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.

‣ 교부신청

사회복지 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: 1만원
-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: 1만원
-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: 5만원

※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.

‣ 자격증 교부

제출된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이 교부됩니다.
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.
※ 민원처리기간: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.